

	보도참고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1.6(수) 14:00부터 보도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,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,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, 법무부 형사기획과,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,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		
책임자	김기한 과장(2156-9470)	담당자	김성진 사무관(2156-9471)
	주환욱 과장(044-215-2750)		김혜련 사무관(044-215-2752)
배포일	이방무 과장(2100-4280)	총 6매	오경석 사무관(2100-4287)
	이준식 과장(2110-3269)		안동건 검사(2110-3544)
	민혜영 과장(044-200-4450)		안창모 사무관(044-200-4447)
	양일남 실장(3145-8260)		엄주동 팀장(3145-8262)

제 목 :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 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1. 회의 개요

- '16.1.6일(수) 금융위는 「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」를 개최하여 「대부업법」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대응한 그간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
-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여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

<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요 >

- ▶ 일 시 : '16.1.6.(수) 14:00~15:00
- ▶ 장 소 :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
- ▶ 참석대상
 - 금융위원회 위원장
 - 기재부 차관, 법무부 차관, 행자부 차관, 공정위 부위원장, 금융위 사무처장(간사) / 경찰청 차장, 금감원장(특별 참석)
- ▶ 논의주제 : 법정 최고금리한도 실효에 대응한 집중 점검방안

2. 그간 대응경과

-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('15.12.29일)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·추진 중에 있음
- 금융위는 광역지자체(시·도) 및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 요청('15.12.29일)
 - 이에 따라,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(34.9%)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 완료
-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*를 경유하여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이자율 한도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완료('15.12.29일)하는 한편,
 - * 저축은행중앙회, 농협·산림조합·신협·수협중앙회, 여신금융협회
 -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부업협회를 통해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 실시
- 지자체 및 금감원은 금리규제 실효 이후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

3. 향후 대응방안

- 정부는 「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」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, 신고센터 설치·운영,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·시행키로 하였음

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(금융위·행자부·금감원)

※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→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,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

- i) (행자부) 시·도별 일일점검·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(주 2회)
 -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(시·도) '상황반'이 기초 지자체(시·군·구) '점검반'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(주 2회)

ii) (금감원)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(주 2회)

※ 다만, 행자부·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

iii) (금융위) 상황대응팀내 「대부금리대책반」 및 「상황점검반」을 통해 대부업권·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·대응실적 종합 집계(매주)

iv) 점검 결과,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, 검·경,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

-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,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·금감원 현장검사 실시

㉔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·운영(금감원, 지자체)

i)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.9%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

ii) 금감원은 既 운영 중인 「불법사금융 신고센터(☎ 1332)」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

*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

iii) 광역 지자체(시·도)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

㉕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(법무부, 경찰청, 금감원)

-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
-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'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'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

④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(금감원)

i)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*에 대해 점검하고,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

* '15.6월말 기준 348개 대부업체 중 대부채권매입추심 전업자 제외

ii)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·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

□ 한편, 1.7일 행자부는 「중앙·지방 정책협의회*」를 개최하여,

* 행자부 차관 주재, 금융위 사무처장, 17개 광역 지자체(시·도) 부기관장 참석

○ 금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

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,

○ 「대부업법」의 조속한 개정,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「서민금융생활지원법」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는 한편,

○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

※ 대국민 홍보 필요사항

① 정부는 금융회사,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(연 34.9%)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.

②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·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(☎ 1332),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③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.9%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,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
 빠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 고

기관별 조치 필요사항

기관명	요조치 사항	내 용	주 기
금융위원회	상황대응팀 운영 및 대응	· 금감원 및 행자부 통보결과를 기초로 점검결과 및 대응실적 취합	주 2회 (화·금)
		· 금융권·대부업권 점검결과 및 대응 실적 종합 및 보고	주 1회 (월)
		· 점검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과 공조 대응	필요시
행정자치부	점검결과 파악·통보	· 대부업체 점검·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(상황대응팀)에 결과 통보	주 2회 (화·금)
광역지자체 (시·도)	점검결과 파악·보고	· 지자체 '점검반'의 점검결과 및 대응 실적을 파악하여 행자부 보고	주 2회 (화·금)
	신고센터 설치·운영	· 관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 접수 ·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업	수 시
기초지자체 (시·군·구)	일일점검	·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	매 일
금융감독원	일일점검	· 금융회사,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	매 일
	점검결과 파악·통보	· 점검·대응실적 파악 및 금융위(상황대응팀)에 결과 통보	주 2회 (화·금)
	신고센터 운영	·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 접수	수 시
	지자체 점검활동 지원	· 대형 대부업체 위규사례 지자체 통보 · 지자체 파견인력, 지원·사무소를 통한 인력지원 등 점검활동 지원	수 시
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	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	·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	수 시